

| | |
|--------------|--------------------|
| 의안번호 | 제 133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07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

| | |
|-------|-------------|
| 발 의 자 | 강태원의원 외 6인 |
| 발의연월일 | 2007년 7월 2일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 (강태원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33 |
|----------|-----|

발의연월일 : 2007년 7월 2일

발 의 자 : 강태원 · 연만흠 · 박재국 · 이필용
김환동 · 조영재 · 이종호(7인)

제정이유

- 가. 자치입법 과정의 단계별 심사기준을 구체적·실질적으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입법을 사전예방하고
- 나. 입법예고, 공포 등 개별 자치법규로 나누어져 있던 입법체계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충청북도조례안사전예고제시행지침(훈령 제01162호)
 -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조례 제02564호)

주요내용

- 가. 입법예고(안 제4조~안 제10조)
 - (1) 예고문 작성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안 제5조)과 관련기관 또는 부서의 협의(안 제10조) 신설
 - (2) 입법과정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청회 제도 도입 (안 제9조)
- ※ 현행 「충청북도조례안사전예고제시행지침(훈령 제01162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였음.

나. 입법안 작성 및 심사(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1) 자치법규 체계·형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별표)」 마련

다.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안 제13조~안 제19조)

- (1)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도민의 권익보호(안 제18조)
 - (2)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전 관계공무원 교육,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9조)
- ※ 현행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조례 제02564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조례에 통합

라. 자치법규의 정비(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 (1) 자치법규 제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치법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치법규에 반영조치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 (2)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정기적으로 정비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참고자료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정의 신뢰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충청북도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충청북도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도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도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입 법 예 고

제4조(입법예고 대상)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도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당해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도지사가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도지사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입법안 작성 및 심사

제11조(입법안 작성)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입법안 심사)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입법안은 별표의 「충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입법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13조(전문) ①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조례의 전문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③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14조(번호) ①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5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6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도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7조(시행일)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사전교육 등) 도지사는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①도지사는 제정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1조(입법의견 제출) ①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도의 정책결정·재정증대 등 시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법진행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입법예고 등을 하여 입법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조례·규칙 등공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⑧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조(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